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9607호, 2019. 3. 12. 일부개정, 3. 12. 시행)됨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4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 지정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2조의2 개정)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함.

나. 실증특례 신청 및 지정 서식의 마련(제4조의2 신설)

1)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2)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실증특례 지정서의 양식을 마련함.

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서식의 마련(제4조의3 신설)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당초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해진 실증특례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O. OO. ~ O. OO.)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조의2제1항제4호 중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이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실

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개정 2020. 12. 10.>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 회색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업종명	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 [] [] [] [] [] []	
	주소	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공장)	전화번호/팩스번호	/
	부설연구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기업 현황	설립일	창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보유·생산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여부	보유한 특허의 등록번호	
	기간	년 분기 ~ 년 분기	
	매출	연간 총매출액	천원
	실적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연구개발투자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기업 홈페이지	htt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12. 10.>

실증특례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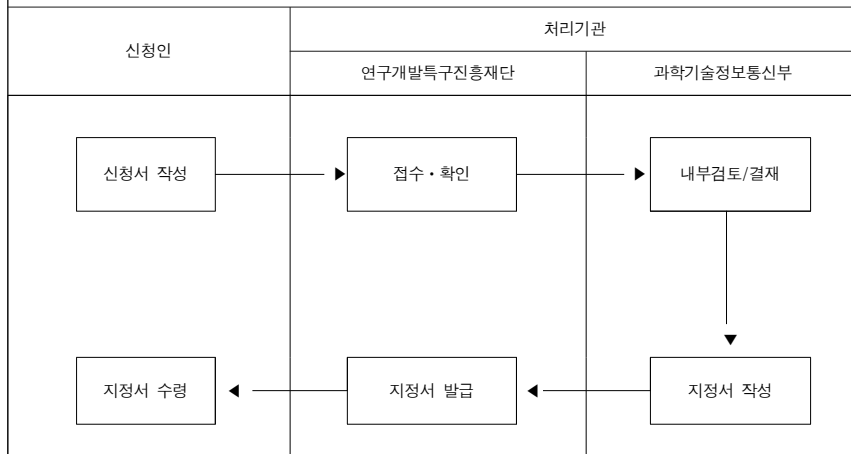
※ 회색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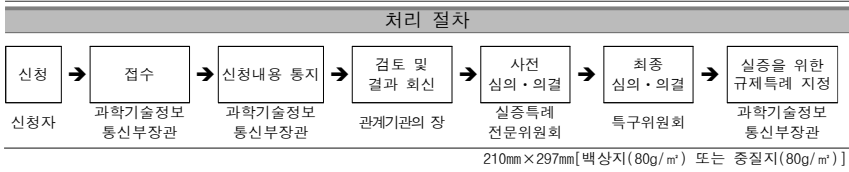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 또는 기업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내용	신기술 명칭 및 실증 주요내용		
	수행지역		
	실증특례 대상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수행규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사유	[]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실증에 필요한 허가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실증에 필요한 허가등의 규정이 맞지 않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실증특례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실증의 범위, 추진방법, 추진일정 다.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가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의 존재여부, 대상, 규모 및 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첨부서류	-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이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총매출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합계를 말하며,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를 합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0. 12. 10.>

실증특례 지정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신청인	기관 또는 기업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본점 주소		
	연구개발특구 내 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		
	실증책임자명(직위)		
신기술 명칭			
주요내용			
수행지역			
대상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지정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별지 제18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12. 10.>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회색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 또는 기업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본점 주소	유형 []대학 []출연연 []기업 []기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기관 주소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		
	실증책임자명(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존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내용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신기술 명칭 및 실증 주요내용		
	수행지역		
	실증특례 대상 법령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수행규모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부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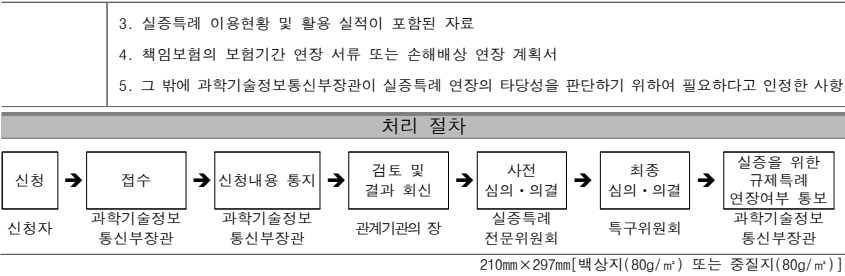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증빙서류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 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4. ----- ----- ----- ----- ----- ----- -----

다)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이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 ⑤ (생략) <신설>	5. ----- -----20퍼센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설>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202-4743